

대용증권이체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용증권의 입·출고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와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이체입고"라 함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증권회사계좌에서 증권예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대용증권위탁자계좌로 계좌대체방식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 2."이체출고"라 함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의 대용증권위탁자계좌에서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용증권이체출고지정계좌(이하 "출고 지정계좌"라 한다)로 계좌대체방식으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3."대용증권위탁자계좌"라 함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개설과 동시에 대용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증권예탁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3조(대용증권의 예탁)

대용증권의 예탁은 이체입고 방법에 의한다.

제4조(대용증권의 이용)

- ①위탁자는 대용증권위탁자계좌에 예탁한 대용 증권에 대하여 회사가 질권(전질권 등을 포함 한다)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②위탁자는 본인의 위탁거래와 관련한 준회원 증거금 또는 거래증거금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한다.

제5조 (대용증권의 인출)

- ①위탁자가 대용증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질권 (전질권 등을 포함한다)을 말소하여 이체출고 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체출고신청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고를 신청한 때에는 출고전표에 본인의 날인 없이 출고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출고지정계좌로 대체처리함에 동의

한다.

제6조(본인확인)

대용증권의 이체 입·출고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출고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사전에 이체출고를 위한 위탁자의 증권 회사계좌를 2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이체입·출고 신청시간)

이체입·출고는 회사가 지정한 입·출고 마감시간 내에 이용하며, 마감시간은 증권회사 업무시간과 증권예탁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제9조(자동해지)

위탁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0조(출고지정계좌사항)

위탁자는 출고지정계좌의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사실을 통지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대체거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3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거래일 동안 게시한다.

②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 거래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